

## 문화예술교육의 수혜적 관점과 향유적 관점 : 문화복지에서 문화공유로의 전환\*

홍애령 상명대학교 · 박재홍\*\* 한성대학교

본 연구는 지난 13년간 우리나라의 문화예술교육에서 나타난 문화복지로서 수혜적 관점을 점검하고 공공재이자 가치재로서 문화예술교육이 지닌 공적 가치는 무엇인지 살펴봄으로써 문화예술교육에 대한 향유적 관점과 문화공유로서의 패러다임 전환을 제안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를 위해 기존의 문화복지로서 행해진 문화예술교육과 수혜적 관점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짚어보고 문화예술교육의 공공재, 가치재적 특성과 공적 가치 등의 기초적 개념들을 우선적으로 다루었다. 첫째, 우리나라의 문화예술교육은 문화복지로서 행해지면서 대중성에는 크게 기여했지만 다수의 학습자에게 문화예술을 교육을 통해 널리 보급하는 것에 초점을 두고 공급자(교육자, 예술가)와 수요자(국민)를 구분함으로써 문화예술교육이 수혜적인 관점에서 행해지게 되는 단초를 제공하였다. 이러한 초기 단계적 문화복지로서의 문화예술교육은 문화예술교육의 태동기에는 충분한 효과를 거두었다고 볼 수 있으나 도약기, 확장기를 거쳐 과도기에 이른 현 시점에서는 한계를 지닐 수밖에 없다. 이제 문화예술교육의 수요자들은 단순히 수혜에 머무르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문화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문화예술교육의 실행을 위해 문화수요자들의 문화향유욕구를 지원하고 소통해야할 필요성이 있다. 둘째, 문화예술교육은 경제적 효과성을 논하지 않고 모든 국민에게 제공되어야 하는 공공재이자 가치재이며 정부나 지역자치단체 등의 개입과 지원을 통해 공고해질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문화예술교육의 공공재적 특성은 문화예술교육이 지향해야할 교육목표 및 교육가치를 재검토해야할 필요성을 제기한다. 모든 이들이 향유하는 공공재로서 문화예술을 가르치고 배우는 과정에는 그 참여자이자 주체자인 모든 사람들이 인정하고 용인할만한 가치가 담겨 있어야 하며, 그것이 실천되어야 할 것이다. 이상을 바탕으로 문화예술교육의 공적 가치를 구체화, 명료화할 수 있는 현장연구와 실천, 공적 가치에 근거한 교육과정 설계와 교수학습지도안의 개발을 제안하였다. 이와 같은 노력을 바탕으로 문화예술교육의 양적 팽창과 더불어 질적 성숙을 이끌어갈 수 있는 새로운 전환기를 맞이할 수 있을 것이다.

주요어 : 문화예술교육, 수혜적 관점, 향유적 관점, 문화복지, 문화공유, 공적 가치

### I. 서론

####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이제 더 이상 우리나라에서 문화예술교육은 생경한 개념이 아니다. 불과 2000년대 초반만 하더라도 기존의 예술교육과 다른 '문화'라는 개념이 선행되어있는 '문화예술교육'이 무엇을 지칭하고 어떻게 실행해야 그 명칭에 걸맞는 것인지에 대해 열띤 논의가 이루어졌다. 비록 2005년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제정을 기점으로 우리나라의 문화예술교육이 태동되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으나 사실 문화예술교육의 태동은 매우 복잡한 요인들에

\* 이 논문은 한성대학교 교내연구비를 지원받았음

이 논문은 한국무용과학회의 2017 춘계학술대회 발표 원고를 수정, 보완한 것임

\*\* 교신저자 : jhpark@hansung.ac.kr

기인하여 진행 중이었다. IMF 직후 사회 전반에서의 고용 불안의 문제가 대두되면서 예술인들의 일자리 창출의 논의가 거세지고 있었으며, 교육계에서는 예체능 교과목의 시수 축소 및 실제 운영의 미비 등이 지적되었고 한편으로는 우리고유의 문화교육으로서 국악교육의 정상화 논의가 대두되었다. 이에 예술강사 지원사업은 1999년 국악강사풀제 시범 도입을 통해 국악 분야를 필두로 하여 연극(2002년), 영화, 무용, 만화·애니메이션(2004~2005년)으로 '예술강사풀제'가 확장되었으며, 2006년 그 명칭이 '예술강사 지원사업'으로 변경되었다. 2010년 디자인, 사진, 공예 분야가 신설되면서 현재까지 총 8개 분야(국악, 연극, 영화, 무용, 만화·애니메이션, 디자인, 사진, 공예)에서 예술강사를 선발, 희망학교를 선정하여 파견, 운영하고 있다.

이러한 예술강사 지원사업은 공교육의 영역에서 기본 교과뿐만 아니라 창의적 체험활동, 방과후학교, 동아리활동 등 다양한 비교과활동 속에 예술을 만날 수 있는 접근성을 확대하는 데에 크게 기여하였고, 학교문화예술교육과 사회문화예술교육이라는 문화예술교육의 커다란 두 개의 축을 구축하는 데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였다. 사회문화예술교육은 타 국가에서는 민간단체에 의해 시행되는 데에 비해 우리나라의 문화예술교육정책에서는 정부주도 하에 행해지는 사업 및 제도로 안착되어 시행되었다. 2011년에는 문화예술교육사 제도가 도입되어 예술강사뿐만 아니라 예술 분야 전공생 및 문화재 전수자들 또한 문화예술을 가르칠 수 있도록 국가 자격을 취득하여 각 시도 문화시설에서 이들을 우선적으로 채용하기 위한 법안이 통과되기도 했다.

그 결과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만 15세 이상 국민 10,71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16년 문화향수실태조사에 따르면 1년 이내 학교문화예술교육 외 문화예술교육이 10.6%로 2014년에 비해 3.7% 성장한 것을 볼 수 있으며 지난 1년간 문화예술행사 직접 관람률은 2014년 71.3%보다 7.0% 증가한 78.3%로 나타나 학교문화예술교육 외에도 사회 전반적으로 문화예술을 즐기고 관람하는 활동이 점진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임을 알 수 있다(문화체육관광부, 2016).

우리나라의 문화예술교육은 1999년 국악강사풀제 시범도입, 2000년 강사풀제의 제도화, 2002년 연극강사풀제, 2004~2005년 영화, 무용, 만화/애니메이션강사풀제의 도입으로 위시된 '태동기', 2005년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시행과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의 설립, 2006년 강사풀제가 예술강사지원사업으로 명칭 변경된 '도약기', 2009년 문화관광부, 교육부 업무협약에 따른 16개 광역시도교육청 예산 확충, 2010년 유네스코 세계문화예술교육대회 개최, 2011년 문화예술교육사 도입으로 대표되는 '확장기'를 거쳐 현재 '과도기'에 도래하였으며, 2016년 기준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에 따르면 문화예술교육정책 예산규모는 총 1,295억에 달하였다(최보연, 2016). 이러한 비약적 성장과정에서 핵심적인 부분은 2005년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시행으로 학교문화예술교육과 사회문화예술교육 영역의 교육 사업이 문화부(현 문화체육관광부)와 교육부의 주도하에 시행되어 점차 지역자치단체 및 민간으로 확대되었으며, 2015년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개정을 기점으로 문화예술교육의 현황과 비전을 재점검해야 할 시기를 맞이했다는 점이다.

그렇다면 문화예술교육은 어떻게 걸어왔고 어떻게 나아가야 하는가? 그동안의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을 중심으로 각 지역문화재단 및 민간단체에서 행해진 문화예술교육 사업들을 살펴보면 주로 공모지원 방식으로 사업이 이루어졌다. 즉 문화체육관광부 및 교육부, 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 등 정부 주요부처의 예산들이 학교문화예술교육, 사회문화예술교육의 영역에서 세부 대상들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시행으로 소요되었으며, 개별 예술강사 및 문화예술단체들이 이에 지원하여 선정되면 시행하는 과정을 거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홈페이지, www.arte.or.kr). 이러한 사업구조의 특성상 문화예술교육은 주로 연령, 성별, 지역 등의 차이를 두지 않고 모든 이들을 두루 즐길 수 있는 교육의 형태로 행해지게 되었으며, 자연스럽게 문화복지 및 교육복지의 차원에서 시행되었다. 또한 사회적 취약계층, 문화소외계층이라는 명칭으로 문화예술에 대한 접근성이 다소 떨어지는 농어촌, 산간지역의 시민들, 군인, 교정시설 수감자, 다문화가정, 한부모가정,

장애인 등을 문화예술교육의 수혜자(수요자)로 포함시키고 일반 시민에 대한 문화예술교육과 더불어 이를 점차 보강하고 있는 추세이다. 이 때문에 찾아가는 문화예술교육 등의 형태로 교육사업의 접근성을 높이고 특정 학습자 집단의 꾸준한 교육이나 참여보다는 많은 학습자들의 참여를 이끌어내는 방향을 취하고 있다. 문화예술교육의 주체는 문화예술교육을 원하는 모든 사람이 되어야 함에도 현재까지는 정부주도하의 공급자 중심의 교육, 수요자를 위한 수혜적 관점을 취하고 있다는 점은 여러 현장 실천가들에게도 비판받고 있다(황경희, 한경원, 김성혜, 김재경, 2016). 이처럼 문화예술교육의 양적 성장 내지는 공급자 중심의 사업 운영을 지양하고 문화예술교육 수요자의 요구와 교육현장의 특성을 고려하여 새로운 지향점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그동안의 문화예술교육에서 중심이 되어왔던 수혜적 관점을 비판하며 문화예술교육을 통해 모든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누려야 할 가치(공적 가치)는 무엇인지에 대해 주목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기존의 문화복지로서 행해진 문화예술교육과 수혜적 관점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짚어보고 문화예술교육의 공공재적 특성과 공적 가치는 무엇인지 탐색하였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논의가 문화예술교육의 과도기를 긍정적으로 타계할 수 있는 방안으로서 어떠한 의의가 있는지를 다루며 마무리하겠다.

## 2. 연구문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현재까지 행해진 문화예술교육은 문화복지로서 어떠한 수혜적 관점을 취해왔는가?

둘째, 문화예술교육의 공공재, 가치재적 특성을 무엇이며 어떠한 공적 가치를 지향할 수 있는가?

셋째, 수혜적 관점을 지양하고 향유적 관점을 지향하는 것은 향후 문화예술교육에 어떠한 의의를 줄 수 있는가?

## II. 문화복지로서 문화예술교육과 수혜적 관점

### 1. 문화복지와 문화예술교육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제3조는 문화예술교육의 기본원칙으로서 “문화예술교육은 모든 국민의 문화예술 향유와 창조력 함양을 위한 교육을 지향한다, 문화예술교육은 모든 국민의 나이, 성별, 장애, 사회적 신분, 경제적 여건, 신체적 조건, 거주지역 등에 관계없이 자신의 관심과 적성에 따라 평생에 걸쳐 문화예술을 체계적으로 학습하고 교육받을 수 있는 기회를 균등하게 보장받는다”라고 명시하고 있다(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2015). 이처럼 문화예술교육 지원법에 명시된 문화예술교육은 모든 국민의 권리로서 문화예술교육을 인정하고 평생교육으로서의 기회 보장을 의미하고 있다. 이는 문화복지로서 문화예술교육의 대중성에는 크게 기여했지만 한편으로 다수의 학습자에게 문화예술을 교육을 통해 널리 보급하는 것에 초점을 두고 공급자(교육자, 예술가)와 수요자(국민)를 구분함으로써 문화예술교육이 수혜적인 관점에서 행해지게 되는 단초를 제공하고 있다.

문화복지는 1980년대 초반 선진한국을 지향하며 복지를 강조하던 제5공화국에서 문화정책을 복지정책차원으로 일부 다루기 시작하면서 국민의 삶의 질을 증진하기 위해 향유자 중심의 문화정책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만들어진 정책적 용어로 ‘문화(culture)’와 ‘복지(welfare)’의 합성어로 볼 수 있다. 이처럼 문화복지는 사회복지정책의 일환으로 사용되었지만 뚜렷한 구분이나 형태가 제시되지 않고 정책적 표현으로 자주 사용되는 개념이다. 우리나라의 헌법 8조와 9조에서는 개인의 행복추구와 문화발전에 있어 국가의 개입을 언급하고 있다(박설희, 2013). 그러나 이는 문화복지에 대해 직접 말하기보다는 근대화 과정에서 비롯된 경제 제일주의

에서 벗어난 인간의 ‘삶의 질’을 강조하고 있다. 이에 따라 문화복지 정책은 ‘문화적 환경 조성’, ‘문화예술교육 지원’, ‘문화예술프로그램 제공 지원’, ‘문화복지 전달체계 구축’, ‘문화복지 매개전문인력 양성사업’ 차원에서 행해져 주로 환경적 차원성과 접근성, 기회의 제공 등 중앙 정부의 지원이 민간으로 하달되는 방식을 고수해왔다(양혜원, 이성태, 도경민, 조지영, 2012).

사전적 의미에서 수혜(受惠)는 “은혜를 입음, 또는 혜택을 받음”을 뜻한다. 그간의 문화예술교육은 중앙정부 부처로부터의 시혜(施惠)적 개념으로 시행되어 왔다. 문화체육관광부나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으로 대표되는 기관에 의해 시행된 ‘찾아가는’ 문화예술공연 및 전시, 문화예술교육이나 ‘문화바우처’ 사업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즉 중앙정부에서는 모든 국민, 그 중에서도 사회적 취약계층이나 문화소외계층으로 규정한 국민들을 중심으로 문화예술의 혜택을 입을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초기 단계적인 문화복지로서 문화예술교육이 행해지는 것은 문화예술교육의 태동기에는 충분한 효과를 거두었다고 볼 수 있으나 도약기, 확장기를 거쳐 과도기에 이른 현 시점에서는 한계를 지닐 수밖에 없다. 이제 문화예술교육의 수요자들은 단순히 수혜에 머무르지 않기 때문이다.

이는 20세기 후반 유럽의 문화예술정책에서 제기된 논쟁과 무관하지 않다. 프랑스, 영국 등 유럽을 중심으로 20세기 후반부터 문화예술은 사회 여러 분야의 성장과 발전에 도움을 주고, 소외된 이웃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불러일으킨다는 측면에서 실용주의적이고 상업적인 목적들에 포함되지 않는 자원이라고 인식되어왔다(최미세, 2014). 이러한 인식은 문화예술정책 분야에서 논의되었던 ‘문화의 민주화’와 ‘문화민주주의’ 개념과 연관되어 있다.

## 2. 서구의 문화예술정책: 문화의 민주화와 문화민주주의

1983년 프랑스 문화부의 연구조사부장 오귀스탱 지라르(Augustin Girard)는 유네스코의 의뢰로 <문화발전: 경험과 정책>이라는 보고서를 작성하면서 이전까지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였던 문화의 민주화라는 문화정책의 목표가 문화민주주의로 전환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권영걸, 2013). 문화의 민주화는 19세기 중반부터 20세기 초반 소위 엘리트 중심의 고급문화를 대중들에게 확산하는 것이 목표였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교양을 기르려는 이유와 그 수단을 가지고 있는 일부의 사람들을 지원하는 활동을 시행하게 하였다. 반면 문화민주주의는 문화다양성을 기반으로 대중들이 문화예술의 창작과 소비에 주체로 참여하는 것을 지향하는 개념이다. 문화의 민주화가 전문가와 이들에 의해 생산되는 문화에 중심을 두었다면 문화민주주의는 아마추어가 소비뿐만 아니라 문화의 생산에도 직접 참여하는 데에 초점을 두고 있다.

이와 비슷한 관점에서 문화학자 존 랑스테드(Jorn Langsted)는 ‘문화의 민주화’가 ‘모든 사람을 위한 문화’(culture for everybody)라고 한다면 ‘문화민주주의’는 ‘모든 사람에 의한 문화’(culture by everybody)라면서 문화수용자의 주체적 측면을 강조하였다(Langsted, 1990). 이러한 논의들은 문화의 민주화로서 문화복지를 위해 미술관과 박물관을 짓고 농어촌 지역을 찾아가서 공연을 보여주고 바우처를 제공하여 관객을 유치했다면, 이제는 문화민주주의로서 모든 국민이 스스로 문화예술활동을 향유하도록 환경을 만드는 데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문화정책 발전 과정에서도 국가가 문화복지를 실현하고자 노력한 흔적을 볼 수 있다. 그러나 서구의 상황과는 조금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 지난 정부에서도 문화국가를 지향하였으나 문화의 주체를 국민에 두지 않고 문화를 국가이데올로기 확립의 수단으로 이용하거나, 향유 주체의 특수성과 자율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양적 확대만을 추구하는 경향이 있었기에 국민의 문화권을 신장하는 성과는 미미했다(권영걸, 2013). 보편적 문화와 문화기본권의 개념은 본질적으로 문화예술이 사회공공재 성격을 지니고 있음을 전제하는 것이다. 하

지만 그 중심을 국민, 시민에 두지 않으면 수직적이고 권위적인 접근으로 이어져 민주주의의 본질을 훼손시키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더욱이 냉정하게 우리나라 문화정책, 예술정책, 문화예술정책의 발의, 집행 과정을 살펴보면 모든 국민이 스스로 문화예술활동을 향유하도록 하는 문화 민주주의와는 거리가 있다. 즉 여전히 정부 주도하에 수직적 방식(Top-down)을 고수하고 있으며 과거에 비해 다수의 민간 문화예술단체들이 활동하고 있지만 여전히 재정적 측면, 문화자본의 측면에서 정부 지원과 완전히 괴리되기는 힘든 구조를 보이고 있다.

서구의 문화예술정책에서 거론된 문화의 민주화로부터 문화민주주의로의 흐름에 주목하는 이유는 우리나라의 현실이 여전히 완전한 문화민주주의에 미치지 못하는 것일지라도 변화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과거에는 문화예술을 향유한다는 것이 단순히 공연예술이나 영화 관람 등 일방적인 정보 전달의 수혜를 받는 것으로 인식되었으나, 이제는 대규모 공간 중심의 전달방식에서 지역사회 중심으로 문화의 규모가 변하고 있는 추세다. 또한 문화예술에 대한 공급자와 수요자의 경계선이 점점 사라지고 공연예술 또한 일시적 프로그램에서 상설 프로그램으로 바뀌고 있다. 문화수요자들의 문화향유에 대한 욕구는 문화예술에 참여해서 수용하는 것에서 만족하지 않고 직접 공급자가 되기도 하고 매개자가 되어 끊임없는 소통을 원하고 있다.

### III. 공공재, 가치재로서의 문화예술교육과 공적 가치

#### 1. 문화예술, 문화예술작품, 그리고 문화예술교육

Jensen(2009)은 미래사회가 문화를 통해 꿈과 감성을 소비한다고 했다. 문화소비를 통한 감성체험이 소비자를 만족시키며 이전에 비해 소득수준이 향상됨에 따라 문화소비계층은 기본적인 단순구매식의 문화소비보다는 자신이 직접 체험하는 것의 가치에 비중을 두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21세기 특정 국가의 문화소비 수준은 문화예술 소비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으며 이는 국가의 경쟁력과도 관련된다. 일례로 공연예술극장이나 박물관, 미술관 등의 문화기반시설들은 문화선진국을 판단하는 기준이 되며, 문화선진국이라는 인상이 강한 국가일수록 사회, 정치적 분야의 자본투자 유치에 유리할 뿐 아니라 국가산업 및 그 생산품의 문화적 이미지를 높게 가질 수 있는 것이다.

이처럼 문화예술은 더 이상 단순한 문화복지의 수단이 아닌 국가경쟁력의 핵심요소가 되기도 한다. 이 때문에 문화예술 및 문화예술교육은 공공성을 지니며 이로 인해 탄생된 콘텐츠 또한 공공재적 특성을 지니게 된다. 대표적으로 서양문화권에서 일찍이 설립된 박물관이나 미술관은 민주주의와 시민사회의 태동과 더불어 다수의 예술작품과 역사적 기록들을 일반 국민과 시민에게 공개하고 공유하는 공공성을 보여준다. 일례로 1793년 개관한 프랑스의 루브르 박물관은 소수의 왕족 및 귀족 개인재산을 시민전체의 공적 소유물로 전환시켜 국유화하였으며 시민들을 무료로 입장하도록 하여 평등과 시민의식을 공고히하는 데에 기여했다(조선령, 2007). 이러한 문화소비를 통해 모든 국민과 시민의 인지적, 정신적 삶을 풍요롭게 하는 문화복지적 민주주의의 사례라 할 수 있다(김상원 외, 2011). 현재 많은 국가에서 박물관과 미술관을 무료로 개방하는 것도 같은 맥락이라 할 수 있다.

그렇다면 박물관, 미술관과 같은 문화기반시설 외에도 콘텐츠를 기반으로 하는 문화예술작품은 공공재인가? 문화예술작품에 대한 공적지원은 1966년 공연예술단체들의 비용 압박문제로부터 제기되었다(Baumol & Bowen, 1966). 일반적인 산업에서 생산단가를 줄이는 등의 노력으로 생산비용을 줄일 수 있는 반면, 공연예술산업은 예술활동 그 자체를 창조해내는 연기자, 무용수, 스태프들을 대체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공연예술상품의 질적 수준은 출연자들의 예술적 전문성에 의해 결정되므로 쉽게 대체가 되거나 비용을 절감할 수 없다. 그

림에도 공연예술, 시각예술 등을 포함한 문화예술작품은 경제적인 가치로 따질 수 없는 문화적 가치를 제공하고 풍요로운 사회조성과 인간성을 회복하는 등의 효과를 지니고 있기에 새로운 경제학적 시각을 요구하게 되었다(이상호, 2009).

이에 따라 등장한 개념이 문화예술지원이다. 중앙정부나 지역자치단체, 민간기업의 경제적 투자를 통해 문화예술지원이 가능한 근거는 문화예술작품이 사적재화이면서 동시에 공공재적 성격이 있기 때문이다(이정만, 2012). 특정 개인작가의 미술작품은 선호하는 소비자 중 가장 높은 가격을 원하는 사람에게 판매할 수 있으며, 소유권은 미술작가에서 금전적 대가를 지불한 소유자에게 넘어간다. 소유권이전 행위는 사적재화의 특징이지만, 미술작품 소유자가 집에 걸어 놓고 작품을 감상하는 소비행위를 할지라도 작품이 소모되거나 마모되지 않는다. 또한 방문객이나 다른 미술관 임대를 통해 소유자 외에도 작품을 감상할 수 있으며, 이때도 마찬가지로 소모되거나 소멸되지 않는다. 작품 감상자는 소유권이 없음에 불구하고 문화가치를 즐기고 느낄 수 있는데, 미술작품이 개인소유의 사적재화와 공공재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Marshall, 2007).

최종적으로 문화예술교육은 어떠한가? 일반적으로 교육서비스는 공공재(public goods) 또는 가치재(merit goods)로 분류된다. 공교육의 형태로 제공되는 초·중등교육은 정부가 제공하는 일종의 교육서비스이므로 공공재라 볼 수 있지만 국민의 세금을 투자하여 교육을 제공하는 이유는 그것이 가치재이기 때문이다(한국교육개발원, 2014). 가치재는 소득수준과 상관없이 사회가 수요로 하는 재화로 교육, 주거, 의료, 문화 등이 있으며 경제적 기능이 가능하지만 바람직한 수준의 거래나 질적 만족도가 낮아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하다(이정만, 2012). 그러므로 문화예술교육은 경제적 효과성을 논하지 않고 모든 국민에게 제공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공공재이자 동시에 가치재이며 이러한 조작적 규정을 통해 정부나 지역자치단체 등의 개입과 지원을 통해 공고해질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이들의 개입 및 지원은 초기 단계의 성장과 제공을 위한 수순일 뿐 더 나은 질적 성장과 발전을 위해서는 문화민주주의에 뿌리를 둔 국민중심의 참여와 성장 기반의 마련이 후행되어야 할 것이다.

한편 문화예술교육의 공공재적 특성은 문화예술교육이 지향해야 할 교육목표 및 교육가치를 재검토해야 할 필요성을 제기한다. 모든 이들이 향유하는 공공재로서 문화예술을 가르치고 배우는 과정에는 그 참여자이자 주체자인 모든 사람들이 인정하고 용인할만한 가치가 담겨 있어야 하며, 그것이 실천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 2. 문화예술교육의 공적 가치

흔히 문화예술교육의 공공성(또는 공익성)이라고 표현될 수 있겠지만 여기에서는 '공적 가치'(public value)라는 개념을 활용하도록 하겠다. 공적 가치는 Mark Moore(1995)가 공공 행정(public administration) 분야에서 창안한 개념으로 공공성(publicness)과 유사한 개념으로 다루어져 왔으나(신희영, 김태수, 2007), 공공성, 공익성이 이념을 의미하는 반면 공적 가치는 실천 방식으로 인식되는 경향(김재철, 2007)이 있으므로 문화예술교육에 더 적합한 개념이라 하겠다.

전통적 개념으로 공적 가치는 생산자(또는 공급자)가 공공서비스에 대한 가치를 규정하고 책정하는 것, 대중에게 돌아가는 가치를 극대화하기 위해 행해지는 공공 서비스로 여겨졌다(Brooks & Wiggan, 2009). 그러나 최근에는 행정, 교육, 방송 및 언론, 교육, 스포츠, 문화예술 분야에서도 논의되고 있다. 교육 분야에서는 국가별 인재의 경쟁력 강화(오육환, 2008), 사회복지에서는 사회적 통합(신희영, 김태수, 2007), 방송언론에서는 보편성(김재철), 스포츠에서는 스포츠의 도구적 가치(오현택, 이정연, 김방출, 2007), 문화예술에서는 대중성과 소통(최미세, 2014)이 각각 공적 가치로 여겨지고 있다. 이러한 공적 가치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신뢰성(credibility), 합법성(legitimacy), 정책 및 체제(system)의 지원이 요구된다(Sam, 2011)

현대적 개념으로 공적 가치는 주어지는 것(given)이 아니라 만들어지는 것(made)으로 이해된다(유정애, 2015). 그러므로 경제적 가치, 정치적 가치, 문화적 가치, 예술적 가치 등을 포괄적으로 부여하고 이해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러므로 문화예술교육이 지닌 공적 가치가 무엇인지 규명하고 이를 극대화하기 위한 시스템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정부뿐만 아니라 민간 및 지역사회단체의 협력을 통한 노력이 시도되어야 할 것이다 (Benington & Moore, 2007).

공적 가치를 지니는 문화예술교육에 대해서는 기존의 문화복지적 관점, 위에서 아래로의 탑다운 방식으로 적용되는 수혜적 관점보다는 문화를 동등한 입장에서 공공재와 가치재로서 공유하는 향유적 관점으로 접근해야 할 것이다. 향유는 본래 무엇인가를 즐기고 나누는 의미를 지니고 있는 개념으로서 문화예술교육지원법에 제시된 국민 누구나가 즐길 수 있는 권리로서 문화예술교육이 행해지려면 문화예술교육을 만들어가고 실행하고 평가하는 모든 과정에 수직적 구조가 존재해서는 어려울 것이다. 그러므로 공공재로서의 문화예술교육, 이것의 공적 가치를 논하는 일은 기존의 문화복지, 문화예술교육을 누구에게 나누어줄 것인가하는 수혜적 관점에서 문화공유, 문화예술교육을 누구와 나눌 것인가하는 공유적 관점에서의 전환을 전제로 하며 이를 구체적인 정책이나 사업으로 가시화하기 위해서는 공적 가치에 대한 정립이 요구될 것이다.

지금까지 제시한 문화예술교육의 공적 가치는 새삼 새로운 것이 아니다. 2010년 세계문화예술교육대회(The 2nd World Conference on Arts Education), 제36차 유네스코 총회에서 ‘서울 아젠다: 예술교육 발전목표’(The Seoul Agenda: Goals for the Development of Arts Education)가 회원국의 만장일치로 채택됐다(권민영, 2016). 193개국에서 채택한 서울 아젠다는 이후 세계 각의 문화예술교육 정책 이행 실적을 분석하는 공통적 기준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으며, 유네스코 석좌 대학교수 등 국제 전문가 집단을 중심으로 서울 아젠다를 기반으로 예술교육 발전을 위한 모니터링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다.

서울 아젠다는 2006년 포르투갈 리스본에서 개최된 제1회 세계대회에서 도출된 ‘유네스코 문화예술교육 로드맵(UNESCO Road Map for Arts Education)’을 토대로 2009년 제2회 세계대회 준비에 앞서 모인 국제자문위원회(IAC: International Advisory Committee) 회의에서 초안이 작성되었다. IAC는 ‘탈산업화’라는 경제적 맥락 속에서 창의적이고 적응력 있는 인력의 필요성뿐만 아니라 평화, 문화적 다양성, 문화 간 이해 등에 관심이 있었으며, 오늘날 세계가 직면한 사회문화적 과제들을 해결하는데 있어 문화예술교육이 직간접적인 기여를 할 수 있다는데 동의했다. 그리고 문화예술교육이 이러한 과제를 성공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높은 수준의 프로그램 기획과 실행이 필요하다. 서울 아젠다는 이러한 사안을 구성 원칙으로 삼고 있다. 서울 아젠다 전문은 2010년 제 2회 세계대회 준비기간 동안 수정을 거친 뒤, 대회 기간 중 전문가 의견과, 발표 및 토의 결과를 반영한 최종 수정안이 2010년 5월 28일 폐회식에서 발표되었으며, 총 3개 목표, 13개 전략, 39개 실천과제로 이루어져 있다(〈표 1〉 참조).

표 1. 서울 아젠다 목표와 전략(유네스코, 2010)

목표(3)	전략(13)	실천과제(39)
1. 심도 있는 교육 활성화를 위한 근본적, 지속적 요소로서 예술교육의 접근성을 확보하도록 한다.	1.a 어린이와 청소년의 조화로운 창의적·인지적·감성적·미적·사회적 발달의 근간으로서 예술교육을 주창한다.	(i) 광범위한 교육의 일환으로 모든 수준의 학교교육에서 학습자들에게 모든 예술분야에서의 포괄적 학습이 가능하도록 접근성을 보장해야 한다. (ii) 지역공동체 내의 모든 예술분야에서 어린이와 청소년을 위한 학교밖 예술 교육 경험에의 접근성을 보장해야 한다. (iii) 예술교육에 대한 접근성 보장이 지속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iv) 학교안과 학교밖 모두에서 어린이와 청소년들에게 범학문적 예술경험에의 접근성을 확보하도록 한다. (v) 교육과정 설계와 교육적 실천면에서 창의적이고 질 높은 예술경험을 포함시켜야 한다. (vi) 예술교육에서 학습자의 원숙한 발달을 보장하기 위해 양질의 평가시스템을 개발해야 한다.

목표(3)	전략(13)	실천과제(39)
1. 심도 있는 교육 활성화를 위한 근본적, 지속적 요소로서 예술교육의 접근성을 확보하도록 한다.	1.b 예술교육의, 예술교육에 관한, 예술교육을 통한 평생교육 및 세대간 교육을 촉진하고 장려한다.	(i) 광범위한 지역공동체와 (공공)기관 환경 내에서 성인 학습자를 위한 예술교육 접근성을 보장해야 한다. (ii) 다른 연령대의 사람들이 함께 예술교육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확보해야 한다. (iii) 전통적 예술 지식을 보존하고 세대간 이해를 촉진하기 위하여 세대간 학습을 촉진해야 한다.
	1.c 예술교육을 통해 정규·비정규 교육시스템 및 구조의 재구축을 촉진한다.	(i) 다른 학문분야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과정의 교육적 모델로서 예술을 적용하도록 한다. (ii) 예술교육을 통하여 교사와 학교 행정가들 간에 창의적 문화를 촉진하도록 한다. (iii) 학습자들의 다양성을 적극 포용할 수 있는 혁신적인 교수법을 도입하여 예술교육에 적용하도록 한다.
	1.d 예술교육의 가치를 널리 알리고 예술교육정책을 활성화하며 예술교육 리더십을 제고하기 위한 역량을 개발하여야 한다.	(i) 예술교육 옹호와 정책 개혁을 위해 실무자와 연구자의 역량을 육성해야 한다. (ii) 예술교육의 가치를 일반 대중이 느끼도록 하고 공공 및 민간부문에서 예술교육을 위한 지원을 이끌어내기 위해 예술교육의 개인적, 사회적 영향을 알려야 한다. (iii) 정보매체와 예술교육간의 관계를 강화하고 적절한 소통 언어를 확립해야 한다. (iv) 국제적 수준에서 커뮤니케이션, 네트워킹, 그리고 예술교육 옹호를 증진하기 위해 기존 국가별, 지역별 데이터베이스들을 연계할 수 있도록 정보기술을 활용하고 인터넷 기반 네트워킹시스템을 이용해야 한다.
2. 예술교육 활동과 프로그램은 그 착상과 전달 면에서 양질의 수준을 유지하도록 한다.	2.a 학교 및 학교 밖의 교육프로그램에서 예술가와 교육가 간의 협력을 촉진한다.	(i) 자기표현 수단, 지식의 통로, 학문 완성의 길 등과 같은 예술교육의 여러 상이한 기능들을 인식하도록 촉구해야 한다. (ii) 교육과정을 전달함에 있어 예술가와 교사간의 파트너십을 시작하도록 학교 당국을 독려해야 한다. (iii) 학교 활동과 관련된 지역공동체에서 예술가들의 협력을 통해 예술교육을 위한 방법과 시설들을 개발해야 한다. (iv) 예술교육을 지원함에 있어 학부모와 지역사회를 적극적으로 관여시켜야 한다.
	2.b 교육자, 예술가, 지역사회를 대상으로 한 지속적인 예술교육 훈련이 이뤄지도록 보장한다.	(i) 예술교사와 교육에 참여하는 예술가들을 위한 지속적인 훈련 매커니즘을 구축해야 한다. (ii) 예술적 원리와 실천을 교사양성교육과 교사재교육 속에 통합해야 한다. (iii) 감독과 멘토링 같은 양질의 모니터링 과정을 개발함으로써 예술적 원리와 실천의 실행을 보장해야 한다.
	2.c 사회 내 다양한 분야에 걸쳐, 다수의 이해관계자들 간에 예술교육을 위한 파트너십을 개발하도록 한다.	(i) 정부, 교육 및 문화부문, 지역사회, 민간부문 안팎에서 예술교육의 사회적 역할을 강화하기 위한 파트너십을 구축해야 한다. (ii) 예술교육의 원리, 정책, 실천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시민사회조직, 정부 및 고등교육기관의 노력을 조정해야 한다. (iii) 교육, 문화, 산업, 커뮤니케이션 부문 간에 다각적인 협력이 이루어지도록 촉진해야 한다. (iv) 예술교육 프로그램들을 개발함에 있어 재단 및 자선기관들을 파트너로서 참여시켜야 한다.
	2.d 예술교육에 있어서 이론, 연구, 실천 간에 논의 및 상호교류를 촉진한다.	(i) 전세계적으로 예술교육 연구를 지원하고 연구와 실천 간에 연계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ii) 옵저버토리와 같은 국제적인 크리어링 하우스(장애제거기구) 구조를 통해 연구결과 및 예술교육 우수사례를 전파해야 한다.
	2.e 이해당사자들과 사회 각 분야간의 문화예술교육 파트너십을 추진한다.	(iii) 예술교육의 효과에 대한 고품질의 증거들을 하나로 모아야 한다.
3. 오늘날 세계가 직면한 사회적·문화적 도전과제를 해결해 나가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예술교육의 원리와 실천을 적용한다.	3.a 사회 전반의 창의적·혁신적 역량 강화를 위해 예술교육을 적용한다.	(i) 예술교육의 적용을 통해 창의적·혁신적 시민과 노동자의 새로운 생성을 촉진해야 한다. (ii) 학교내 예술교육을 통해 다른 교과목으로 전이될 수 있는 창의적·혁신적 역량을 촉진할 수 있는 전략을 개발하도록 해야 한다. (iii) 학교밖 예술교육을 통해 지역사회 내에서 창의적·혁신적 실천을 촉진할 수 있는 전략을 개발하도록 해야한다.

목표(3)	전략(13)	실천과제(39)
3. 오늘날 세계가 직면한 사회적·문화적 도전과제를 해결해 나가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예술교육의 원리와 실천을 적용한다.	3.b 사회적·문화적 복지를 향상시키는 예술교육의 역할을 인식하고 발전시킨다.	(i) 광범위한 전통예술 및 현대예술 경험들의 가치를 인식하도록 촉구해야 한다. (ii) 예술교육의 지유적·보건적 측면에 대한 인식을 제고해야 한다. (iii) 정체성 및 문화유산 개발·보전함에 있어서 예술교육의 잠재적 가치를 인식하도록 촉구해야 한다. (iv) 갈등 및 재난을 거친 후의 상황에서 예술교육의 복원적 차원에 대한 인식을 장려해야 한다. (v) 사회문화적 복지를 예술교육 훈련에 통합해야 한다. (vi) 학생 참여를 촉진하고 중도탈락율을 줄이기 위한 동기부여 과정으로 예술교육을 활용해야 한다.
	3.c 사회적 책무, 사회적 통합, 문화 다양성 및 문화상호간 대화를 촉진함에 있어 예술교육의 역할을 지원하고 제고하여야 한다.	(i) 무엇보다도 학습자 특유의 맥락적 상황에 대한 인식에 우선순위를 두어야 한다. (ii) 다양한 문화적·예술적 표현에 대한 보다 나은 지식과 이해를 위해 접근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iii) 필요한 교사훈련, 교수법, 장비 및 학습재료의 제공으로 다문화 예술교육을 발전시켜야 한다.
	3.d 세계평화로부터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르기까지 주요한 지구적 도전과제에 대응하기 위하여 예술교육 역량을 촉진한다.	(i) 지속가능발전교육(ESD) 같은 유네스코 주요 프로그램들과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간에 시너지 효과가 발행하도록 해야 한다. (ii) 대화와 상호이해를 촉진하기 위해 학습자와 교의 문화간 이동성을 제고해야 한다. (iii) 예술교육 교과과정에서 지구적 문제들을 폭넓게 다루어야 한다. (iv) 민주주의, 세계 시민성, 문화 다양성 등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예술교육을 적용해야 한다.

이러한 서울 아젠다는 일종의 문화예술교육의 공적 가치를 담고 있는 초안이라 할 수 있다. 이를 기점으로 세계 각국에서는 후속연구가 진행 중이지만 그 결과들을 종합적으로 장기간 추적하는 연구는 현재로서 INRAE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2011년 독일에서 개최된 ‘국제 예술교육 모니터링과 비교연구(International Monitoring and Comparative Research in Arts Education)’의 후속 성과로 구성된 국제예술교육연구네트워크(INRAE: International Network for Research in Arts Education)는 2010년 세계문화예술교육대회 공식보고자였던 캐나다의 래리 오퍼렐(Larry O´Farrell) 유네스코 석좌 교수를 포함하여 독일 에른스트 바그너(Ernst Wagner) 유네스코 석좌 교수 등 각국 전문가들이 협력하여 발족되었다(권민영, 2016). 이 네트워크에서는 서울 아젠다를 토대로 지속적인 예술교육 모니터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연구를 장려하고 연구성과의 토론, 실행사례 발표를 위한 포럼의 조직뿐 아니라 서울 아젠다의 이행을 추구하고 모니터링할 책임을 하나의 역할로 상정했다(래리 오퍼렐, 2016). INRAE는 2012년 ‘국가예술교육시스템모니터링: 전 세계 서울 아젠다 이행 분석 시범연구(Monitoring national arts education systems(MONEAS): A pilot study investigating the implementation of the Seoul-Agenda in the world)’ 프로젝트를 시작하였다. 이 프로젝트는 유네스코 회원 국가의 예술교육정책과 실행에 있어 서울 아젠다의 권고사항을 어느 정도 반영하고 있는지 점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2013년과 2014년 준비기간과 시범연구 이후 본격 진행되었으며 2013년에 발간된 『INRAE 연감』을 시작으로 유네스코, 세계은행, OECD 등 문화 및 교육관련 국제기구 데이터와 두 차례에 걸친 전문가 온라인 조사를 통해 자료를 수집하여 그 결과를 국제 컨퍼런스를 통해 공유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2012년과 2013년 서울 아젠다의 이행 실적을 분석한 연구를 진행한 바 있다. 2012년 5월 파리 유네스코 본부와 함께 공동개최한 제1회 세계문화예술교육 주간에서 발표된 「한국에서의 서울 아젠다 전략과 실행(Practices and Strategies of the Seoul Agenda in Korea)」보고서에서는 2008년부터 2011년까지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주요 정책사업과 활동을 중심으로 서울 아젠다 이행실적을 분석하였으며, 한국

은 서울 아젠다 목표 1의 경우 56%, 목표 2는 30%, 목표 3은 14% 이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높은 이행 점수를 받은 전략은 1.c(530.6점), 1.a(303.9점), 2.c(255.0점)로 예산 규모가 큰 학교안팎 문화예술교육이 큰 기여를 한 목표 1에 대한 사항이 두드러졌다. 반면, 가장 부진한 항목은 2.a(35.0점), 2.d(43.0점), 3.b(48.9점), 3.d(51.0점), 3.a(54점)로 대부분 표준 개발, 인력 네트워크, 예술교육의 사회적 역할 발전 등에 해당하는 사항들이다.

2013년에는 호주, 카자흐스탄, 뉴질랜드, 싱가포르의 유네스코 문화예술교육 옵저버토리 회원기관과 홍콩(중국) 유네스코 지역문화 교육 창의성 연구 옵저버토리와 함께 「문화예술의 저력 확산: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문화예술교육 탐구(Releasing the Power of the Arts: Exploring Arts Education in the Asia-Pacific)」 연구사업을 진행하였다. 이 연구는 한국, 호주, 카자흐스탄, 뉴질랜드, 싱가포르, 홍콩(중국) 6개국/특별행정구의 문화예술교육 관련 정책(교육정책, 교육과정, 문화정책)을 살피고, 서울 아젠다의 목표, 전략, 실천과제를 기준으로 각 국가별 이행실적을 분석하고 있다. 서울 아젠다를 기준으로 연구에 참여한 6개국 모두 3가지 목표에 상응하는 문화예술교육 정책 및 주요사업을 시행하고 있었다. 13개 전략 중 한국을 제외한 어느 나라에서도 이행되고 있지 않은 전략은 1.d, 2.a, 2.c, 2.d, 3.d로 나타났다. 한국은 13개 전략 모두를 정책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전략에 따른 39개 실천과제를 모두 이행하고 있는 국가는 없었지만, 과제 별로 최소 2개국 이상에서 이행되고 있으며, 6개국 모두 공통으로 이행하고 있는 실천과제는 1.c(i), 1.c(ii), 2.b(i), 2.e(i), 3.a(i), 3.b(i), 3.c(ii) 등 7가지로 나타났다.

이러한 서울 아젠다에 관한 관심은 예술 장르별 국제단체로 파급력을 높이고 있다. 2011년 5월 유럽음악협의회(the European Music Council, EMC)에서는 음악교육 전문가들을 초청한 자리에서 서울 아젠다의 내용이 유럽 음악교육에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를 논하였다. 이러한 본 선언(The Bonn Declaration)은 유럽의 각 국가 및 지역 차원의 정책으로 음악교육 분야에서 음악 교육의 발전을 위한 공통의 의견을 반영하고 있다(Bonn Declaration, 2011).

뿐만 아니라 매년 세계문화예술교육주간에는 서울 아젠다에서 상정된 목표들을 수반하기 위한 행사들이 개최되고 있다. 가장 최근 열린 2017 세계문화예술교육주간에는 호주, 이집트, 말레이시아, 칠레 등에서 전시 및 공연을 기반으로 한 교육행사가 시행되었다. 호주 2017 아트토크(Art Talk)에서는 예술인들이 직접 연사로 나서 예술교육을 통해 창의성을 탐구하기 위한 행사로 예술인들과 직접 대화하며 교류하는 형식의 <애델레이드 오케스트라의 배움과 참여 축제(Adelaide Symphony Orchestra's Festival of Learning & participation)>, <드림빅 아동 축제(DreamBIG Children's Festival)> 등 다양한 참여형 행사가 마련되었다. 이집트 수에즈대학에서 진행된 '국제문화예술교육 주간 예술축제(Suez University International Week of Arts Festival)'에서는 '유네스코가 상징하는 여성과 평화 그리고 발전'에 대한 가치를 예술을 통해 승화하기 위한 미술교육, 회화, 수공예품, 조각 분야의 작품 전시회를 개최하였다. 말레이시아에서는 '예술과 재미를 함께(Art and Fun Together)'라는 행사를 개최하여 서울 아젠다의 취지에 부합하는 대중을 위한 예술 교육을 실시하고, 말레이시아 영유아 창의성 개발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공예 및 회화 작품전시 및 토론 등이 진행되었으며, 칠레에서는 칠레 전역의 초·중등생 및 초·중등 예술교육자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예술 경험의 가치를 확산하고, 올해의 주제인 '창의적 호기심'을 직접 경험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기획행사를 마련하였다(콘텐츠개발팀, 2017).

현재까지 각국에서 세계문화예술교육 주간을 중심으로 행해진 문화예술교육 행사들은 대체로 서울 아젠다에서 규명한 목표, 전략을 수반하려 노력하고 있지만, 각 국가별 독자적인 해석이나 운영방식에 대한 공적 합의는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차후의 이에 대한 실천방식에 대한 논의도 시도되지 못하고 있다. 현 시점에서 적

어도 우리나라에서 목표, 전략, 실천과제의 실효성을 점검하고 서울 아젠다를 기초로 한 문화예술교육의 공적 가치가 무엇인지 규명하고 구체적인 교육과정이나 시스템의 개발이 요청된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문화예술교육을 통해 개인이 인식하는 개인적 가치가 사회적 가치, 공적 가치와 환원되어 보다 적극적인 형태의 문화복지, 수혜적 관점이 아닌 주체적 관점으로서의 문화예술교육을 지향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 IV. 문화공유로서 문화예술교육과 향유적 관점

‘공유’(共有)는 ‘두 사람 이상이 한 물건을 공동으로 소유함’을 의미한다. 문화예술교육에서 행해지는 문화공유는 동음이의어인 ‘공유’(公有), 즉 국가나 지방 자치 단체의 소유는 아니어야 할 것이다. 그간의 우리나라 문화예술교육정책 및 그 실행의 산실인 문화예술교육이 문화와 예술을 기반으로 한 문화의 공유를 전제로 하고 있다면 그것을 정부나 특정 단체의 소유로서 의도된 지역과 대상에게 하달되는 방식으로 접근되어서는 안될 것이다. 이 글에서는 이를 수혜적 관점이라 명명하며 문화예술교육의 변천과 발전사에서의 과도기적인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현상으로 규정하였다. 그렇다면, 과도기를 지나 발전기를 향하는 현 시점에는 무엇을 지향해야 하는가. 이를 수혜적 관점과 문화복지의 차원에서 행해진 문화예술교육과 비견하여 향유적 관점과 문화공유의 차원이라고 제시하였다.

‘문화공유’는 문화와 예술 등 인간의 역사, 철학, 사회, 정치 전반을 둘러싼 지식과 가치의 공유를 의미한다. 문화예술교육의 일환으로 행해지는 학교안과 밖의 교육에서는 자연스럽게 특정 국가와 민족에게 전달되어온 인류의 양식으로서 문화를 학습하고 그것이 지식의 형태로 전달되나 각 구성원에게는 가치로 내면화된다. 그리고 그것을 학습한 국민들은 문화와 예술에 관한 안목을 지니게 되며 이것을 ‘기꺼이 누리어 가지게’ 될 것이다. 이것이 문화향유(享有)이며, 그것의 형태가 소극적이어서 단순한 관람 수준에 머물거나 적극적이어서 스스로 문화와 예술을 생산하는 수준으로 나타날 수 있다. 이러한 문화향유의 유형을 최별초롱과 신형덕(2016)은 체험형 문화향유경험과 성취형 문화향유경험으로 구분했다. 체험형 문화향유경험자는 문화향유의 대상을 관람하고 감상하는 행위를 통해 즐거움을 느끼는 반면 성취형 문화향유경험자는 문화향유대상을 학습하고 그 정보와 기술 등을 상호 교류하며 새로운 창조물을 제작하는 행위를 통해 즐거움을 느낀다는 것이다. 최근의 문화예술교육에서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문화향유경험은 그것이 문화자본의 형성을 가져올 수 있기에 주목받고 있다.

문화예술교육의 향유적 관점을 논하기 위해 철학적으로 향유의 개념을 살펴보면 관조적 향유와 체험적 향유로 구분할 수 있다(권선영, 2017).. 향유에 대한 전자의 입장으로, 칸트는 「판단력비판」(백종현 역, 2009)에서 ‘향수(ästhetische Genuß)’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이야기한다. 그는 인간의 향수는 어떤 대상에 대하여 그 질적 요소 및 속성을 관조하는 태도로부터 일어나는 것이라 하였다. 향수는 ‘대상에 의해서 촉발되는 방식에 의해 받아들이는 수용 능력’이며 주체인 자신은 그 대상에 대하여 모든 관심이나 욕망을 초월한 무사심적인 태도로 존재한다. 이러한 칸트적 의미에서 향유는 주체자인 내가 적극적으로 행하는 어떠한 활동이 아니라, 대상을 관조하며 그 속성을 수용하는 소극적인 인식의 활동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그러므로 ‘향수’는 대상 그 자체에서만 생기는 것이기에 반드시 대상을 관조하는 일이 전제되어야만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와 대비되게 헬름 딜타이는 ‘향유’의 발생은 대상으로부터 나오는 것뿐만 아니라, 주체자의 내적 경험들과의 연관에서 일어나는 것이라 말한다. 그는 칸트의 입장과 같은 자연과학에는 부재하는 내적 경험, 자아의 변형을 이용한 대상의 이해, 정신을 통해 파악될 수 있는 사실들, 그것들의 상호 연관 등을 정신과학에 대한 자신의 저서들 「정신과학 서설」(1966), 「정신과학에 있어 역사세계의 구성」(1968)을 통해 밝히고 있다(박순

회, 2012). 딜타이의 향유 개념은 즉, 주제의 내적 경험에 중점을 두는 ‘온전한 체험’으로서의 향유를 의미한다. 어떤 대상을 향하여 일어나는 체험들이 모두 통합되어져 ‘감정’에 ‘온전히 체험’함으로써 그 대상이 갖는 ‘자연과의 일체감’에서 향유가 일어난다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본 연구에서 향후 지향해야 할 문화예술교육에서의 향유적 관점은 칸트적 의미에서의 관조적이고 수동적인 향유 개념보다는 딜타이의 체험적이며 주체적인 의미에서의 향유 개념에 보다 동의하고 있다. 즉 문화복지의 수혜자로서 문화예술의 소외계층을 그 대상으로 규정하고 관조적으로 문화예술을 관람하는 수동적 향유는 수혜적 관점을 유지하던 과도기에서도 실현이 가능했던 부분이나, 적극적 향유를 지향하여 문화를 공유하고 만들어가는 주체자로서 국민과 시민들이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는 것이 향후 문화예술교육정책 및 실행에서 지향해야 할 과제인 것이다.

## V. 요약 및 제언

본 연구는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제정 13년 후인 현 시점에 그동안의 문화예술교육에서 중심이 되어왔던 수혜적 관점을 비판하며 문화예술교육을 통해 모든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누려야 할 가치(공적 가치)는 무엇인지에 대해 주목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기존의 문화복지로서 행해진 문화예술교육과 수혜적 관점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짚어보고 문화예술교육의 공공재적 특성과 공적 가치는 무엇인지 탐색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문화를 공유하는 향유적 관점에서의 전환을 제안하며 구체적인 문화예술교육의 공적 가치가 담론으로 형성되는 것의 중요성을 다루었다. 본문에서 주되게 다루었던 점은 첫째, 우리나라의 문화예술교육은 문화복지로서 행해지면서 대중성에는 크게 기여했지만 다수의 학습자에게 문화예술을 교육을 통해 널리 보급하는 것에 초점을 두고 공급자(교육자, 예술가)와 수요자(국민)를 구분함으로써 문화예술교육이 수혜적인 관점에서 행해지게 되는 단초를 제공하였다. 이러한 초기 단계적 문화복지로서 문화예술교육이 행해지는 것은 문화예술교육의 태동기에는 충분한 효과를 거두었다고 볼 수 있으나 도약기, 확장기를 거쳐 과도기에 이른 현 시점에서는 한계를 지닐 수밖에 없다. 이제 문화예술교육의 수요자들은 단순히 수혜에 머무르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문화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문화예술교육의 실행을 위해 문화수요자들의 문화향유욕구를 지원하고 소통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둘째, 문화예술교육은 경제적 효과성을 논하지 않고 모든 국민에게 제공되어야 하는 공공재이자 가치재이며 정부나 지역자치단체 등의 개입과 지원을 통해 공고해질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문화예술교육의 공공재적 특성은 문화예술교육이 지향해야 할 교육목표 및 교육가치를 재검토해야 할 필요성을 제기한다. 모든 이들이 향유하는 공공재로서 문화예술을 가르치고 배우는 과정에는 그 참여자이자 주체자인 모든 사람들이 인정하고 용인할만한 가치가 담겨 있어야 하며, 그것이 실천되어야 할 것이다.

이상을 바탕으로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문화예술교육의 공적 가치를 구체화, 명료화할 수 있는 현장연구와 실천을 병행해야 한다. 현재 문화예술교육을 통해 각 개인이 인식하는 개인적 가치, 사회적 가치 등은 중구난방식으로 개별화되어 강조되고 있는 상황이다(양혜원, 이성태, 도경민, 조지영, 2012). 문화예술교육의 체계를 공고히하고 수혜적 관점에서 벗어나 주체자로서 적극적인 문화예술향유를 위해서는 각 개인이 공통적으로 지향하고자 하는 공적 가치를 구체화하고 명료화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그 시작은 학교문화예술교육, 사회문화예술교육 등의 영역에서 예술강사, 문화예술교육사, 학습자들을 통해 실천적으로 점검되어야 효과적일 것이다. 둘째, 공적 가치에 근거한 교육과정 설계와 교수학습지도안의 개발이 요청된다. 현재 학교문화예술교육과 사회문화예술교육, 그리고 기타 공모지원사업 등을 통해 신생되고 사라지는 문화예술교육의 영역들은 단발성 사업에 그치고 마는 경향이 있다. 그러므로 교육의 연속성을 유지하고 평생교육으로서의

가능성을 획득하기 위해 공적 가치를 기준으로 한 교육과정의 설계가 필수적이며 이를 체계적으로 지도하기 위한 교수학습지도안의 개발과 보급이 요청된다. 이와 같은 노력을 바탕으로 문화예술교육의 양적 팽창과 더불어 질적 성숙을 이끌어갈 수 있는 새로운 전환기를 맞이할 수 있을 것이다.

## 참고문헌

- 권민영(2016). 국제적 가이드라인을 넘어 새로운 도전으로. 아르떼365(2016.04.11.), <http://www.arte365.kr/?p=50713>. 2017.05.17. 검색
- 권선영(2017). 무용은 어떻게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가? - 무용의 문화예술교육적 가치 실현을 위한 무용향유체험의 질적 분석. 미간행 박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 권영걸(2013). 문화 융성의 기초, 문화기본권. 서울신문 오피니언 열린세상(2013.03.08.),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30308030007&spage=1>. 2017.05.17. 검색
- 김상원, 박순찬, 김영석, 오륜(2011). 도시재생사업을 통한 컬처노믹스 복지(Culturumomics Welfare) 실현 방안에 관한연구. 인문콘텐츠, 22, 163-181.
- 김재철(2007). 공영방송의 공적 가치 인식과 수신료 부담의지의 관계에 관한 연구. 한국방송학보, 21(2), 258-304.
- 래리 오퍼렐(2016). 연구 성과로 이어지는 서울 어젠다-서울 어젠다 채택 5주년을 맞이하여. 아르떼365(2016.05.02.), <http://www.arte365.kr/?p=51285>. 2018.02.28. 검색
- 박설희(2013). 문화복지 정책에 관한 연구: 청소년의 문화예술향유 접근방법을 중심으로.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단국대학교.
- 박순희(2012). 빌헬름 딜타이의 '예술적 향유'에 관한 고찰: 「정신과학의 정초를 위한 연구」(1905)를 중심으로.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영남대학교.
- 신희영, 김태수(2007). 공적 가치의 이론적 배경과 역사적 변천. 서울행정학회 학술대회 발표논문집, 1-33.
- 양혜원, 이성태, 도경민, 조지영(2012). 문화복지 정책의 사회·경제적 가치 추정과 정책방향. 서울: 한국문화관광연구원.
- 오옥환(2008). 교육정책에서 공적 가치와 사적 자유의 딜레마. 교육사회학연구, 18(1), 93-109.
- 오현택, 이정연, 김방출(2007). 스포츠의 공공성과 공동체주의. 한국체육학회지, 46(2), 57-65.
- 유네스코(2010). 제2차 유네스코 세계문화예술교육대회: 서울 아젠다. 유네스코.
- 유정애(2015). 스포츠교육학의 공적 가치 의미와 기능 탐색. 체육과학연구, 26(2), 329-341.
- 이상호(2009). 문화경제학의 쟁점과 가능성: 트로스비와 클레머의 논의를 중심으로. 동향과 전망, 76, 176-203.
- 이정만(2012). 사립미술관의 공적 문화가치와 관련변수에 관한 연구-천안 리각미술관 사례를 중심으로. 문화경제연구, 15(1), 95-114.
- 조선령(2007). 변화하는 문화환경과 미술관의 공공성문제: 기획전시를 중심으로. 현대미술사연구, 22, 199-232.
- 최미세(2014). 문화예술의 공적가치와 문화민주주의. 독일어문학, 64, 395-415.
- 최별초롱, 신형덕(2016). 체험형 및 성취형 문화향유경험이 문화향유의향에 미치는 영향. 유라시아연구, 13(3), 217-233.
- 최보연(2016). 문화예술교육 정책의 현황과 새로운 방향성을 위한 탐색. 학교 문화예술교육 정책 토론회 자료집, 1-11.
- 콘텐츠개발팀(2017). 2017 세계문화예술교육 주간 기념 해의 주요 행사. 아르떼365(2017.05.22.), <http://www.arte365.kr/?p=58735>. 2018.02.28. 검색.
- 한국교육개발원(2014). 단위학교 교육서비스의 범위확대에 따른 재정투자 변화 양상. 한국교육개발원 이슈페이퍼 2014-12.
-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2015).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10년. 서울: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 황경희, 한경원, 김성혜, 김재경(2016). 학교 문화예술교육 관계자 토론. 학교 문화예술교육 정책 토론회 자료집, 39-46.
- Baumol, W. J., & Bowen, W. G. (1966). *Performing Arts: the economic dilemma*. New York: The Twentieth Century Fund
- Benington, J., & Moore, M. (2007). *From private choice to public value?*. Institute of Governance & Public Management, Warwick Business School.
- Bonn Declaration(2011). *Bonn Declaration*. <http://www.emc-imec.org/cultural-policy/music-education/bonn-declaration/2017.07.16>. 검색

- Brooks, S., & Wiggan, J. (2009). Reflecting the public value of sport. *Public Management Review*, 11(4), 401-420.
- Jensen, R. (1999). *Dream Society*, 서정환 역(2005). 드림 소사이어티. 서울: 리더리드 출판.
- Kant, I. (1790). *Critique of Judgment*. 백종현 역(2009). 판단력 비판. 서울: 아카넷.
- Langsted, J. (1990). Strategies in cultural policy, in Jorn Langsted(ed), *Strategies: Studies in modern cultural policy*(pp.16-18), Aarhus: Aarhus University Press.
- Marshall, J. (2007). *The economics of public support for the arts*. SIPP Briefing Note, Saskatchewan Institute of Public Policy, University of Regina.
- Moore, M., & Khagram, S. (2004). *On creating public value: what business might learn from government about strategic management*. A Working Paper of the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Initiative.
- Sam, M. (2011). Building legitimacy at sport canada: pitfalls of public value creation?. *International Review of Administrative Sciences*, 77(4), 757-778.

ABSTRACT

---

**Exploring Beneficial Perspective on Culture and Arts Education and its Public Value***Aeryung Hong Sangmyung University · Jaehong Park Hansung University*

Based on the expanding beneficial perspective on Culture and Arts Education and its public valu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plore beneficial perspective on Culture and Arts Education and its public value in Korea. For doing this, this paper has classified the concept of cultural welfare, beneficial perspective, characteristics as public goods, and public value into classical and modern concepts and re-conceptualized it throughout diverse concepts implemented in several areas. Thus, this paper has explored beneficial perspective on Culture and Arts Education and the meaning of public value in Culture and Arts Education. Lastly, this paper has suggested the conceptual framework to extend the areas that can be applied the public value of Culture and Arts Education with reflection about academic and practical activity. Also curriculum development and application for realization of the public value were needed.

**Key words** : Culture and Arts Education, beneficial perspective, enjoyment perspective, sharing of culture, cultural welfare, public value

---

논문투고일: 2018. 02. 28

논문심사일: 2018. 04. 02

심사완료일: 2018. 04. 02